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8회 임시회 (2025. 9. 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5-85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5년 8월 14일(목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5년 8월 18일(월)

2. 제출사유

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
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추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추가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-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 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7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5. 검토보고

가. 개정목적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8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를 목적으로, ▲관광사업 홍보 관계자 면제 규정 신설, ▲관광숙박업소·여행업체·제휴상점 이용자 감면 규정 신설, ▲구 주최·후원 행사 참가자 감면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나. 주요내용

○ 정의 조항 정비

-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‘구’라 한다)”로 변경하여, 이후 조문에서 용어 사용을 간결화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(이하 “마포순환열차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

<p>버스 “라 한다) “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.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○ **이용료 면제 대상 확대(제5조제1항)**

- 구 관광사업 홍보 목적의 단체·기관 관계자를 이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함.
- 다만, 타 자치단체 사례는 대부분 단기적·행사성 무료 제공에 국한되었으며, 상시적 제도화 사례는 드물.

타 자치단체 사례

□ 서울시 사례¹⁾

- 2020년 서울시는 「메모리즈 인 서울(Memories in Seoul)」 프로그램을 통해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3주간 무료 투어를 진행한 바 있음.
- 덕수궁,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등 주요 명소를 순환하며, 연극·판소리·무용 등 문화공연을 접목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, 이는 관광 홍보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 단기적 무료 운영 사례임.

□ 세종시 사례²⁾

- 2022년 세종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2층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하여 세종호수공원, 대통령기록관,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순환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.
- 초기에는 관광객 유치와 제도 홍보를 위해 무료 시범운행을 실시하였고, 이후 정식 유료 운영으로 전환한 바 있음.

- 이처럼 관광홍보 목적의 무료 제공은 단기적 이벤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, 상시 규정화할 경우 운영비 부담이 장기간 구 재정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이용료 면제 및 감면) ①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<u>마포구에</u>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</p>	<p>제5조(이용료 면제 및 감면) ① 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람</u>에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마포순환열차버스 등과 관련한 구 관광사업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및 단체(기관) 관계자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구</u>에 -----</p> <p>-----</p>

1) (내 손안에 서울 2020.11.04. 보도) 시티투어버스 타고 과거로 시간여행...3주간 무료 이벤트
 2) (브레이크 뉴스 2024.03.21. 보도) 세종시, 시티투어 2층 버스 타고 '세종 한 바퀴'

○ **이용료 감면 기준 신설(제5조제3항)**

- 관광숙박업소·여행업체·제휴 상점 이용자, 구 주최·후원 행사 참가자,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최대 40%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음.
- 감면 확대는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, 실질적 효과,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, 특정 단체와의 제휴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③ <u>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 활성화 및 관광지 홍보에 참여하는 관광숙박업소 또는 여행업체를 이용한 사람</u> 2. <u>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과 제휴한 상점을 이용한 사람</u> 3. <u>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한 사람</u> 4. <u>그 밖에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
○ 감면율 및 방법 규정 위임(제5조제4항)

- 세부 감면율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- 규칙 제정 시에는 제휴업체 및 행사 참가자 확인 절차, 증빙서류 제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, 감면제도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·검토할 필요가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④ 제3항의 감면율 및 감면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

○ 이중 감면 방지 규정(제5조제5항)

- 둘 이상의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,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.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 하나만 적용한다.</u>

○ 용어 정비(제6조)

- ‘자’를 ‘사람’으로 변경하여 표현을 명확히 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제6조(이용료의 환불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.	제6조(이용료의 환불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전액 환불	1. -----
가. 운행 1일 전까지 예약 취소가 확인된 <u>자</u>	가. ----- ----- <u>사람</u>
나.·다. (생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2. 일부 환불	2. -----
가. 운행 당일 예약을 취소한 <u>자</u> : 이용료의 50%	가. ----- <u>사람</u> : -----

다. 검토의견

- 순환열차버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위해 면제·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.
- 특히 마포구는 직영 운영 체계로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됨.

- 다만, 현재 순환열차버스가 적자 운영 중인 상황에서 면제·감면 대상을 상시적으로 확대할 경우, 구 재정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, 타 자치단체 사례에서도 관광 홍보 목적의 무료 운행은 대부분 단기 이벤트성에 국한되어 있고, 이를 제도화한 사례는 드문 실정임.
- 또한, 제276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³⁾된 ▲실시간 위치 확인 불가 ▲만석 시 장시간 대기 ▲차량 시설 및 안내방송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감면 확대를 추진할 경우, 실질적 이용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.
- 따라서,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면제·감면 적용 대상을 일정 기간 및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운영 결과에 대한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제도화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.

3)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, 시범운영 중 파악된 문제점

연번	문제점
1	안내방송 보완
2	차량 선팅이 너무 진함
3	저녁 차량 내 실내등 밝음
4	차안에 소음이 많음
5	노선도 영문버전 없음
6	버스 실시간 위치 파악 불가
7	냉·난방기 가동시 전기소모량 증가로 인한 2회 주행후 충전 필요
8	운행 관련 정보 안내 부족
9	만석시 1시간 대기
10	노선의 다양화 필요
11	잔여 좌석 표시 필요

■ 지방자치법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